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18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4월 22일
- 회 부 일 : 2022년 4월 22일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405, 2021.6.24.)과 관련, 인구편차 한계를 벗어난 마포구 “아”선거구, 강서구 “라”선거구, 강남구 “바” 선거구를 개정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며,

나.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와 자치구 인구수의 변동, 동 명칭 변경, 인구 편차 기준 변경에 따른 일부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확정안 내용으로 자치구별 선거구의 명칭,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개정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근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가. 개정 배경 및 상위법령과의 관계

-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일부선거구(마포구 아, 강서구 라, 강남구 마)가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일탈(인구비율 최대편차 3:1, 50%)에 따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8헌마405, 2021.6.24.) 사항을 해소하고, 자치구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2022. 4. 15 개정, 2022. 4.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 선거구획정 의견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22.4.15)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지역구 정수 증원(강동+1명)** 및 **선거구 변경(강남)**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체정수 : (기존)110명
→ (변경)**112명(+2명, 지역1·비례1)**
- (자치구의회의원) 기초의원 **정수 증원(+1명)** 및 **중대선거구 시범도입(4곳)**
 -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 (기존)423명 → (변경)424명(+1)
 -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서초구갑

[부칙17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을**국회의원선거구, **성북갑**국회의원선거구, **강서을**국회의원선거구, **서초갑**국회의원선거구 내 의원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함.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자치구의원 정수 변경

- 의원 총정수 : 423 → 424(지역 370, 비례 54)
 - ※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에 따른 증원정수 포함시 427명(지역 373명, 비례 54명)
- 증원 자치구 : 동대문구 1명 증원(지역1), 강서구 1명 증원(지역1), 서초구 1명 증원(지역1), 마포구 1명 증원(지역1) 등 4명 증 조정(지역 4)

자치구의원 선거구 변경

○ 선거구수 : 161 → 154개, 7개 감 조정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5인 선거구
조정 전	161	114(71%)	47(29%)	0	0
조정 후	154 (-7)	98(64%) (-16)	50(32%) (+3)	3(2%) (+3)	3(2%) (+3)

중대선거구 실시 적용 지역

자치구	기존	변경	행정동명
동대문구 아선거구 증원1	마(2)바(2)선거구 통합	마선거구(4)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사(2)아(2)선거구 통합+ 국회의원 추가 증원(1)	바선거구(5)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선거구 축소(8→6)		
성북구 증원없음	가(2)나(3)선거구 통합	가선거구(5)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다(3)라(2)선거구통합	나선거구(5)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선거구 축소(8→6), 선거구 명칭변경(마→다, 바→라, 사→마, 아→바)		
강서구 마선거구 증원1	라선거구(2) + 마선거구 1석 이동	라선거구(3)	공향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마바선거구통합 + 마선거구1석 감원+ 국회의원 추가 증원1	마선거구(4)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등촌제3동
	※선거구 축소(9→8), 선거구 명칭변경(마·바→사, 사→바, 아→사, 자→아,)		
서초구 가선거구 증원1	가선거구(3) +국회의원추가 증원1	가선거구(4)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라선거구(2)	마선거구(2)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선거구 명칭변경(다→라, 라→마, 마→다)		

헌법불합치 해소 지역

자치구	기존	변경	행정동명
마포구	아선거구(2)	아선거구(3)	성산2동, 상암동
강남구	라(개포1,4)마(개포2)	라선거구(2)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마(일원1,2)바(일원본)	마선거구(2)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바(수서, 세곡)	바선거구(2)	세곡동, 수서동,
송파구	마선거구(3)	바선거구(2)	삼전동, 잠실3동
	바선거구(2)	라선거구(3)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강동구	가선거구(2)	가선거구(3)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사·아선거구(4)	바선거구(3)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선거구 축소(8→6)		

행정동명 명칭정비

선거구	기 존	변 경
강북구 가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강북구 나선거구	수유제1동,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 라선거구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기초의원 선거구명 명칭 변경

자치구	기존		변경안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구	위원회의결안	행정동명
성동구	제2선거구	나선거구	제4선거구	라 선거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	제2선거구	나 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	제3선거구	다 선거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마포구	제1선거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제2선거구	다 선거구 라 선거구	용강동, 신수동 대흥동, 염리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 라선거구	제1선거구	가 선거구 나 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구로구	제1선거구	가선거구	제4선거구	바 선거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가리봉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	제3선거구	라 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5동
		다선거구		마 선거구	구로제1동, 구로제2동
	제3선거구	라선거구	제1선거구	가 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마선거구		나 선거구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제4선거구	바선거구	제2선거구	다 선거구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서초구	제3선거구	다선거구	제4선거구	라 선거구	서초2동, 서초4동
		라선거구		마 선거구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	제3선거구	다 선거구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	
송파구	제3선거구	라선거구	제4선거구	마 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마선거구		바 선거구	삼전동, 잠실3동
	제4선거구	바선거구	제3선거구	라 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사선거구		자 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제5선거구	아선거구	제6선거구	차 선거구	가락2동, 문정1동	
	자선거구		사 선거구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제6선거구	차선거구	제5선거구	아 선거구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법 시행일(2022. 4. 20.) 후 9일(2022. 4. 29.)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부칙 제4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의 총정수는 424명(2018년 대비 1명 증원)으로 법에 규정(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시범실시 지역내의 자치구의회에는 지역구 자치구의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으며,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함)되어 있고,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획정위원회가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행정 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100분의 10, 단수는 1로 뺌)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 정수는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 원칙

- ① 자치구 의원 정수는 총정수(서울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 424명) 범위 내에서 자치구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정함(법 제23조 제1항).
- ② 자치구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함(법 제23조 제2항).
- ③ 비례대표 자치구 의원 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뺌(법 제23조 제3항).
- ④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법 제26조 제2항).
- ⑤ 지역구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내에서 선거구 획정(법 제26조 제2항, 제4항).
- ⑥ 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동의 일부 분할 불가(법 제26조 제3항).
- ⑦ 의원정수 산정 기준 (규칙 제4조 제1항)
 - 총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인구비율과 행정동수 비율 고려
 - 의원정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구 및 행정동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함.
 -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함.
- ⑧ 지역구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안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함 (규칙 제4조 제2항).

※ 상하 50%의 편차 범위 내(2021. 6. 24. 2018헌마405)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제1~6차 획정위원회 운영결과('21.9.8~10.13)
 - 의원정수 : 의원1인당 인구수를 고려 최대 과대·소 대표 자치구의원정수 조정(종로 비례-1석, 서초 지역+1석)
 - 선거구획정 : 헌법불합치 대상 5개 자치구(마포, 강서, 강남, 송파, 강동) 선거구 조정을 통해 헌법 불합치 해소
 - 조례안 제출 : '21.10.13
 - 헌법불합치 선거구에 대한 위헌요소 제거를 위해 조례개정안 제출 했으나, 의회 미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획정안 확정 후 철회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의결('22.1.10.)
 -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헌법불합치지역의 경우 기존 선거구 잠정적용 및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120일부터('22.2.1~)
 - 시의원, 구의원 및 장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기간개시일 전90일('22.2.18~)
- 공직선거법 개정('22.4.15)
- 제7차 획정위원회 개최('22.4.19)
 -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자치구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위원회안 의결

- 획정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편차(3:1)를 고려하여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 불합치된 자치구를 3인선거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제고하여 전체의원 정수중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동대문구의 의원 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하고, 3인 선거구 확대(3개) 및 4인 선거구(3개) 와 5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3개)하려는 것임.

1)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 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5인 선거구
조정 전	161	114(71%)	47(29%)	0	0
조정 후	154 (-7)	98(64%) (-16)	50(32%) (+3)	3(2%) (+3)	3(2%) (+3)

〈2021년 획정위원회 제안사항〉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불합치 및 이에 준하는 인구편차를 가진 선거구의 위험적 요소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최소기간 내 이루어져 차후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시 제안사항에 대해 의결함.

- ① 표의 증가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별정수 및 선거구 개편 등의 논의를 위해 차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충분한 운영기간 보장 필요
- ② 선거구 획정위원회 논의 전 관계기관 사전의견 수렴 등 사전의견청취 절차 강화
- ③ 위원회안과 지역이견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 절차 명확화
-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확인 절차 필요
- ⑤ 4인 선거구획정에 대한 지역여건 등 명문화 기준 마련 필요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일탈 선거구(마포구 아, 강서구 라, 강남구 바)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율 최대편차 3:1, 50%)를 일탈하는 선거구(송파구 바, 강동구 가, 강동구 아)도 조례개정을 통해 위험적 상황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2021. 6. 24. 2018헌마405]

【판시사항】

1.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8.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강남구 “바”선거구, 강동구 “바”선거구, 마포구 “마”선거구, 마포구 “야”선거구, 종랑구 “샤”선거구, 동대문구 “샤”선거구, 송파구 “차”선거구, 강서구 “라”선거구, 강동구 “라”선거구가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3. 이 사건 선거구란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재판소 선례 -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이 사건 동대문구 “사”선거구란, 중랑구 “사”선거구란 및 송파구 “차”선거구란은 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이 사건 마포구 “아”선거구란, 강서구 “라”선거구란 및 강남구 “바”선거구란은 각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선거구란 중 이 사건 마포구 “아”선거구란, 강서구 “라”선거구란 및 강남구 “바”선거구란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실시한 각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들의 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조례〔별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은²⁾ ‘표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33¹/₃%)편차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는 것은 인구편차 한계를 일탈하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조례개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시민들의 참정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시급성과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하였는바, 입법예고 미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 행정국은 정당 및 자치구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2) 2021. 6. 24. 2018헌마405결정(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위헌확인)

- 또한, 선거구를 확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선거결과가 가능한 한 주민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면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할 것임.
- ※ 이러한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1인 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음.

나. 자치구의회별 의원정수(안 별표)

- 개정안은 확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18명에서 19명(1명 증원 : 지역 1명)으로 하고, 법 개정에 따른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동대문구의회, 강서구의회, 서초구의회 의원정수를 1명씩 증원(지역 1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의 의원 정수는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있음.
-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의 경우 국회의원의 총 정수와 의석증원 권한에 따라 3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1명씩(추가증원 : 동대문구을 증1, 강서구을 증1, 서초구갑 증1, 성북구갑 증 없음) 증원하였음.

[공직선거법 부칙17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 ②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에는 지역구자치구 의원을 추가로 1인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 확정위원회는 헌법불합치 및 이에 준하는 인구편차를 가진 선거구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였으며, 법 개정 법정기한(선거 6개월전)을 도과한 선거일 47일전('22.4.15) 국회 본회의가 의결됨에 따라 현재의 선거구의 큰 변화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다고 함.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기준]

(선거구획정 기본방향)

-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편차(3:1)를 고려하여
-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를 3인선거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선거구제의 취지 제고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안-인구기준 : 2021.8.31)

-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현 의원수에 증감

※ 편차 = 해당자치구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구별	현 행			개 정 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 계		369명	총정수 423명 (지역구 369, 비례대표 54)		373명	총정수 424명 (지역구 370, 비례대표 54) ※공직선거법 부칙제17조에 따른 증원정수 포함시 총정수 427명 (지역 373, 비례대표 54)
동대문구	소 계	<u>16</u>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u>17</u>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 2)
	동대문구가 선거구	2	용신동	동대문구가 선거구	2	용신동
	동대문구나 선거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나 선거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다 선거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다 선거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라 선거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라 선거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마 선거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마 선거구	4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동대문구바 선거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동대문구 사 선거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바 선거구	5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아 선거구	2	장안제1동			
마포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대표 2)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대표 2)
	마포구 가 선거구	2	용강동, 신수동	마포구 가 선거구	2	공덕동
	마포구 나 선거구	2	대흥동, 염리동	마포구 나 선거구	2	아현동, 도화동
	마포구 다 선거구	2	공덕동	마포구 다 선거구	2	용강동, 신수동
	마포구 라 선거구	2	아현동, 도화동	마포구 라 선거구	2	대흥동, 염리동
	마포구 마 선거구	2	서강동, 합정동	마포구 마 선거구	2	서강동, 합정동
	마포구 바 선거구	2	서교동, 망원1동	마포구 바 선거구	2	서교동, 망원1동
	마포구 사 선거구	2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마포구 사 선거구	2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마포구 아 선거구	2	성산2동, 상암동	마포구 아 선거구	3	성산2동, 상암동
	강서구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 3)	소 계	20
강서구 가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가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거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나 선거구	2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다 선거구		2	우장산동	강서구 다 선거구	2	우장산동
강서구 라 선거구		2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라 선거구	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마 선거구		2	가양제1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4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등촌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2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강서구 사 선거구		2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2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아 선거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사 선거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자 선거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강서구 아 선거구	2	화곡본동, 화곡제6동
서초구	소 계	13	의원정수 15 (지역구 13, 비례대표 2)	소 계	14	의원정수 16 (지역구 14, 비례대표 2)
	서초구 가 선거구	3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서초구 가 선거구	4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자치구별	현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서초구 나 선거구	3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4동	반포2동, 방배1동	서초구 나 선거구	3	반포본동, 방배본동, 방배4동
서초구 다 선거구	2	서초2동, 서초4동		서초구 다 선거구	3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
서초구 라 선거구	2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서초구 라 선거구	2	서초2동, 서초4동
서초구 마 선거구	3	서초1동, 방배2동, 방배3동	서초3동	서초구 마 선거구	2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신설>				비고 1.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를국회의원선거구는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 17조제1항에 따라 의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한다. 2.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내의 자치구 중 동대문구바선거구, 강서구마선거구, 서초구가선거구 각각에 지역구자치구의원수 1명을 추가한다.		

○ 다만, 자치구 선거구를 확정하고 각 자치구의회의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자치구의원의 총정수가 424명으로 법(별표 3)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자치구의 구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려면 다른 선거구의 구의원 정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제로섬 관계인 점과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자치구의회 선거구 변경(안 별표)

- 개정안은 서울시자치구의회 선거구수를 현행 161개에서 154개(감 7개)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2인 선거구 114개를 98개(감 16개)로 하고, 현행 3인 선거구 47개를 51개(3개 증)로 확대하며, 4인 선거구 3개(증 3), 5인 선거구 3개(증 3)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5인 선거구
조정 전	161	114(71%)	47(29%)	0	0
조정 후	154 (-7)	98(64%) (-16)	50(32%) (+3)	3(2%) (+3)	3(2%) (+3)

5인선거구 확대(2인선거구 감4 3인선거구 감2, 5인선거구 증3)

동대문구	사(2)아(2)선거구 통합+ 국회의원 추가 증원1	바선거구(5)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성북구	가(2)나(3)선거구 통합	가선거구(5)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다(3)라(2)선거구통합	나선거구(5)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4인선거구 확대(2인선거구 감4 3인선거구 감1, 4인선거구 증3)

동대문구	마(2)바(2)선거구 통합	마선거구(4)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강서구	마바선거구통합 + 1석 감원 + 국회의원 추가 증원1	마선거구(4)	방화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등촌제3동
서초구	가선거구(3) +국회의원추가 증원1	가선거구(4)	잠원동,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3인선거구 확대(2인선거구 감8 3인선거구 증6)

마포구	아선거구(2)	아선거구(3)	성산2동, 상암동
강서구	라선거구(2) + 1석 이동	라선거구(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동구	가선거구(2)	가선거구(3)	강일동, 상일제1동, 상일제2동, 고덕제2동
	나선거구(2)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다선거구(2)	고덕제1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라선거구(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사(2)·아(2)선거구	바선거구(3)	

2↔3인선거구 변경

송파구	마선거구(3)	바선거구(2)	삼전동, 잠실3동
	바선거구(2)	라선거구(3)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변경

강남구	라(개포1,4)마(개포2)	라선거구(2)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마(일원1,2)바(일원본)	마선거구(2)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바(수서, 세곡)	바선거구(2)	수서동, 세곡동

- 5인 선거구 신설(3개)과 4인 선거구 신설(3개) 관련하여 확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개정에 따른 자치구 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따른 특례 조문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및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 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내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각각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 2-3인선거구 변경에 따른 송파구의 경우에는 마선거구(기존 3인 선거구)와 바선거구(기존 2인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2인과 3인 선거구를 변경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의원 선거구와 구의원 선거구가 동일하게 중복 확정됨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선거비용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구 확정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확정위원회의 선거구확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표의 증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의 이해관계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입이라는 확정위원회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강동구 및 강동구의회에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³⁾를 근거로 1인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의회가 선거구확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자치구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함)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선거구확정위원회는 1인의 증원은 신설된 시의원선거구에 우선 배정 하고, 강동구의 나머지 지역은 전체 자치구별 선거구 정수를 감안하여 조정하였다는 입장임.

3)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자치구·시·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신설된 시·도의원지역구에는 자치구·시·군의원 1인이 우선 배정되도록 반영한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답변

【질의 내용】

1. 시의회에서 개정조례안 심사시 자치구의원정수를 수정의결하는 경우, 의회의 고유권한인 수정의결에 따라 조례가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서울특별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는 이를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자치구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함)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행정동명 및 기초의원 선거구명 명칭정비(안 별표)

- 그 밖에 별표에서 자치구 일부 동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바,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행정동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동 명칭 변경에 따라 강북구 번제1동을 번1동으로, 번제2동을 번2동으로, 번제3동을 번3동으로, 수유제1동을 수유1동으로, 수유제2동을 수유2동으로, 수유제3동을 수유3동으로 변경하였음.

선거구	기 존	변 경
강북구 가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강북구 나선거구	수유제1동,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 라선거구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미아동, 송중동, 번3동

- 또한, 성동구(나선거구→라선거구, 다선거구→나선거구, 라선거구→다선거구), 마포구(가선거구→다선거구, 나선거구→라선거구, 다선거구→가선거구, 라선거구→나선거구), 구로구(가선거구→바선거구, 나선거구→라선거구, 다선거구→마선거구, 라선거구→가선거구, 마선거구→나선거구, 바선거구→다선거구), 서초구(다선거구

→라선거구, 라선거구→마선거구, 마선거구→다선거구), 송파구(라선거구→마선거구, 마선거구→바선거구, 바선거구→라선거구, 사선거구→자선거구, 아선거구→차선거구, 자선거구→사선거구, 차선거구→아선거구)가 선거구명 명칭변경을 하였음.

자치구	기존		변경안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구	위원회 의결안	행정동명
성동구	제2선거구	나선거구	제4선거구	라 선거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제3선거구	다선거구	제2선거구	나 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제4선거구	라선거구	제3선거구	다 선거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마포구	제1선거구	가선거구	제2선거구	다 선거구	용강동, 신수동
		나선거구		라 선거구	대흥동, 염리동
	제2선거구	다선거구	제1선거구	가 선거구	공덕동
		라선거구		나 선거구	아현동, 도화동
구로구	제1선거구	가선거구	제4선거구	바 선거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가리봉동
	제2선거구	나선거구	제3선거구	라 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5동
		다선거구		마 선거구	구로제1동, 구로제2동
	제3선거구	라선거구	제1선거구	가 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마선거구		나 선거구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제4선거구	바선거구	제2선거구	다 선거구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서초구	제3선거구	다선거구	제4선거구	라 선거구	서초2동, 서초4동
		라선거구		마 선거구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제4선거구	마선거구	제3선거구	다 선거구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	
송파구	제3선거구	라선거구	제4선거구	마 선거구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마선거구		바 선거구	삼전동, 잠실3동
	제4선거구	바선거구	제3선거구	라 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제5선거구	사선거구	제6선거구	자 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아선거구		차 선거구	가락2동, 문정1동
	제6선거구	자선거구	제5선거구	사 선거구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차선거구		아 선거구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마. 종합 의견

-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유권자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가능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하겠음.
 - 서울시 자치구위원의 총정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 심사 범위 및 수정 의결 권한 등이 상당히 제약된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선거관리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일정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획정위원회의 권한 및 그 의결내용을 의회가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획정위원회의 ‘자치구별·선거구별 의원정수 기준’인 인구수, 행정동수 등에 대한 주요 자치구 및 정당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바, 이해 당사자 및 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평성 있고, 균형잡힌 획정 노력과 함께 의견수렴 및 신중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의 총정수는 424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100분의 10, 단수는 1로 뺀)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 정수는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입법조사관

김 정 덕

I 위원회 운영개요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 운영개요

- 인원 : 총 11명(비상근)
 - 서울시의회(2명),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1명), 학계(2명), 법조계(2명), 언론계(2명), 시민단체(2명)에서 추천한 중 선정
- 임기 : 위촉된날부터~선거구획정안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역할

- 자치구별 자치구의원 정수 책정(법§23 및 규칙§4)
 - 총 정수 :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짐 (서울:423명)
 - 자치구 기준 : 자치구별 인구 및 행정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책정
- 자치구별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26)
 - 기준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지역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II

추진경과

□ 헌법 불합치 결정('21.6.24, 2018헌마405)

- 투표가치평등을 위해서 자치구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자치구의
원 1인당 평균 인구수로부터 **상하 50%(3:1)로 하는 것이 타당**
※ 기존 인구편차 기준 상하60%(4:1) 편차범위내('09.3.26. 2006헌마14)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마포구·강서구·강남구 인구편차 상하 50%일탈 헌법 불합치 결정

□ 제1~6차 획정위원회 운영결과('21.9.8~10.13)

- 의원정수 : 의원1인당 인구수를 고려 최대 과대·소 대표 자치
구의원정수 조정(종로 비례-1석, 서초 지역+1석)
- 선거구획정 : 헌법불합치 대상 5개 자치구(마포, 강서, 강남, 송파,
강동) 선거구 조정을 통해 헌법 불합치 해소
- 조례안제출 : '21.10.13
- 헌법불합치 선거구에 대한 위헌요소 제거를 위해 조례개정안 제출
했으나, 의회 미상정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의결('22.1.10.)

-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헌법불합치지역의 경우
기존 선거구 잠정적용 및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120일부터('22.2.1~)
- 시의원, 구의원 및 장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기간개시일 전90일('22.2.18~)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2.1.1.자로 효력이 상실**한〔별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 부분을 잠정 적용한다.

(2022. 1.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 공직선거법 개정('22.4.15)

- (광역시의원) **지역구 정수 증원**(강동+1명) 및 **선거구 변경**(강남)
 - 시의원 전체정수 : (기준)110명 → (변경)112명(+2명, 지역1·비례1)
- (기초구의원) 기초의원 **정수 증원(+1명)** 및 **중대선거구 시범도입(4곳)**
 -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 (기준)423명 → (변경)424명(+1)
 -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 동대문을, 성북갑, 강서을, 서초갑

[부칙17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을**국회의원선거구 , **성북갑**국회의원선거구 , **강서을**국회의원선거구, **서초갑**국회의원선거구 내 의원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함

□ 제7차 확정위원회 개최('22.4.19)

-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반영 및 자치구의원 정수·선거구 확정 위원회안 의결

Ⅲ 자치구 선거구획정 결과

□ 선거구 획정 기준

〈선거구획정 기본방향〉

-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편차(3:1)를 고려하여
-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의원정수에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를 3인선거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선거구제의 취지 제고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안 - 인구기준 : 2021.8.31.〉

-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기준으로 현 의원수에 증감

※ 편차=해당 자치구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 ÷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원 1인당 인구수

〈선거법 개정에 따른 확정기준〉

- 공직선거법이 법정기한(선거 6개월전)을 도과한 **선거일 47일전** ('22.4.15)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준비시일 촉박**
- **기초의원 411명 등록**('22.4.18, 서울기준)되어 있으며 조례개정 까지 고려하면 후보자 등에게는 **한달 남은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
→ **현재의 선거구 변화는 혼란 초래하며 기존** 확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확정하는 것이 선거후보자등 고려할 때 타당

□ 의원정수 결과

- **의원 정수 : 427명**(지역 373, 비례 54) ※ 기존 기초의원 총정수 423명
- **마포구 기초의원 1인 증원**(총정수 18명 → 19명)
 - 마포구 아선거구(2인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152%)**에 따라 의원정수 1인 증원(3인선거구)을 통해 헌법불합치 해소(107%)
-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기초의원 3인 증원**(동대문, 강서, 서초)
 - 시범지역에 대한 국회의원의 총 정수의 의석증원 권한에 따라 3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1석씩 증원
 - *추가증원(3) : 동대문(1), 강서(1), 서초(1), 성북(추가증원 없음)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

[부칙17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 ②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에는 지역구자치구 **의원을 추가로 1인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 §23(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기초의원 총정수 (별표3) 규정

§26(지방의원의원선거구 확정) ② : 자치구의원 정수 등은 시조례로 정함

〈2021년 획정위원회 제안사항〉

⇒ 금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불합치 및 이에 준하는 인구편차를 가진 선거구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최소기간 내 이루어져 차후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시 제안사항에 대해 의결함

- ① 표의 증가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별정수 및 선거구 개편 등의 논의를 위해 차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충분한 운영기간 보장 필요
- ② 선거구 획정위원회 논의 전 관계기관 사전의견 수렴 등 사전의견청취 절차 강화
- ③ 위원회안과 지역의견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 절차 명확화
-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확인 절차 필요
- ⑤ 4인 선거구획정에 대한 지역여건 등 명문화 기준 마련 필요